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1319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26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18. 7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,437,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437,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및 별지 제3목록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이순형

별지